

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기준

	승인일	시행일	승인권자
재정	2008.06.27	2008.06.27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1 차 개정	2009.03.02	2009.03.0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2 차 개정	2009.09.24	2009.09.24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3 차 개정	2012.05.09	2012.05.09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4 차 개정	2014.01.27	2014.01.27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5 차 개정	2015.01.26	2015.01.26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6 차 개정	2015.10.05	2015.10.05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 기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회사내 운용담당자 등 집합투자재산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며, 대상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항의 단서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른 증권(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를 포함 한다)에 한한다. 단, 투자신탁재산별로 각각의 계좌를 두고 계좌별로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사전자산배분"은 법 제80조에서 규정한 투자재산신탁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운용담당자"는 실제 및 가상의 투자신탁을 직접 운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 ③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여 직접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을 실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개정 등) 이 기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내규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자구수정 등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장 사전자산배분

제5조(일반원칙) 회사의 자산배분절차는 다음 각호의 내용들을 원칙으로 한다 .

- ① 회사는 매매와 자산배분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
- ② 모든 고객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은 특정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재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 ③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분리 및 사전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자산배분원칙) (개정 2012.5.9, 2014.1.27, 2015.1.26, 2015.10.05) ① 운용담당자가 다수의 투자신탁재산별 동일한 매매조건으로 동시에 주문하는 경우 취득, 매각한 자산은 각 펀드에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② 주문시간이 다른 동일한 종목에 대한 각각의 주문은 별개의 주문으로 본다.

③ 공모주, 회사채 등의 수요예측을 통한 자산취득의 경우 운용담당자는 청약일에 투자신탁별로 청약수량을 기재한 사전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모주 및 회사채 등의 청약은 그 실행결과가 법 제 81 조 제 1 항 제 1 호 각목 및 각 투자신탁규약에서 정한 해당 자산의 최대편입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실행해야 한다. (개정 2014.1.27, 2015.1.26)

⑤ 회사가 배정받은 공모주 및 회사채는 투자신탁별로 청약수량에 안분비례하여 배정한다.

⑥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사사오입하여 배정하되 잔여수량은 청약수량이 가장 많은 투자신탁에 배정할 수 있다.

⑦ 대량매매(시간외 대량매매에 한 한다)의 경우 운용담당자는 참여 대상펀드를 선정하여 CIO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배분 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⑧ 최종 매매체결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재산별 주문비율(주식수 비율, 채권액면 비율)에 따라 안분 배분한다. 또한, 투자신탁재산별 수량 배분후 잔여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주문펀드에 잔여수량을 배분할 수 있고, 소량의 배분만이 이루어져 보유의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배분을 증가시키거나 전혀 배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채권자산의 경우 체결규모가 주문수량에 미달할 것을 예상하여 투자신탁별 상황 및 운용필요에 따라 우선배분 등 안분외 방법을 사전에 배분조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명시한 내용대로 배분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5.10.05)

⑨ 각 투자신탁별로 주식 및 채권, 기타 전략별 투자자산 등을 투자하고 남은 운용가능한 유동성자금을 RP(환매매수조건부매매) 및 콜론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대한 자금운용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합산하여 통합운용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설정 1개월 내 투자신탁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투자신탁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또는 추가배분을 할 수 있다.(신설 2015.10.05)

제7조(사전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의 공시) 회사는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3장 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

제8조(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①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주문금액,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와 투자신탁재산별 배분내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매매주문서 및 자산배분내역서는 전산으로 기록 유지되어야 하며 CIO 및 준법감시인이 이행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매매주문서의 작성 및 매매주문의 실행

제9조(매매주문서의 작성) ①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종목, 주문금액, 수량, 가격, 주문시간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매매주문서상의 가격주문은 해당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되며, 지정가격,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특정 주문방법 혹은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주문을 접수할 수 있다.

제10조(매매주문서의 실행) 매매담당자는 사전에 작성된 매매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배분내역서 작성

제11조(자산배분내역서의 작성) ①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서와 체결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내역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산배분내역서는 체결된 종목에 대하여 체결가격, 배분가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펀드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장 운용업무와 매매업무의 분리

제12조(운용업무와 매매업무의 분리)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겸직금지 예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자구수정 2015.10.05)

제13조(당일 발행자산의 특례) 당일 발행자산(당일 거래시간 중에 사전예고 없이 발행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는 채무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

문을 체결 할 수 있다. 이때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신탁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역을 매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한다.(신설 2015.10.05)

제7장 사전자산배분의 정정

제14조 자산배분내역서에 따른 체결자산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정정이 불가하다. 다만, 시스템 오류, 운용담당자의 주문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통하여 정정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사건의 원인, 관련된 이해상충이 없음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신설2015.10.0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6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